

당진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32호 2020. 11. 30.(월)

규 칙

제273호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274호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제275호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6
제27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7

훈 령

제110호	당진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1
-------	-------------------------------	----

고 시

제2020-2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고시.....	16
제2020-2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7
제2020-2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수리 고시.....	19
제2020-26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
제2020-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31
제2020-264호	도로명주소 고시.....	33
제2020-26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9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
제2020-268호	도로명주소 고시.....	37
제2020-272호	솔피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41
제2020-273호	고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시행계획(변경) 고시	43

공 고

제2020-2094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5
제2020-2100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제2020-2128호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회 랑						
-----	--	--	--	--	--	--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1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73호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협력사업비 보고 등)”을 “(협력사업비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란 당진시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당진시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 ②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협력사업비 보고 등) ① <u>금고지정과 관련된 협력사업비</u> <u>를 수령한 단체는 집행즉시 그</u> <u>결과를 관련부서에 보고하고,</u> <u>관련부서는 협력사업비 운영전</u> <u>반을 매년 1월에 시 홈페이지에</u> <u>공개한다.</u></p> <p>② <u>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명칭여</u> <u>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u> <u>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u> <u>운용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u>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란</u> <u>당진시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u> <u>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u> <u>금고은행에서 당진시에 용도 지</u> <u>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u> <u>다.</u></p> <p>② <u>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u> <u>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u> <u>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u> <u>·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u> <u>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1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74호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범위) 「당진시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용 및 유지비
2.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3.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난방비, 통신비 및 야식비
4.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의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순찰대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1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75호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당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1월 30일

당진시 규칙 제27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을 “사용해서 지워 없애거나”로 한다.

제2조(「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3조(「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기양양대책”을 “사기진작 대책”으로 한다.

제4조(「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 ⑤ (생략)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u>사용하거나 도말 또는</u> 고쳐 쓸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사용해서 지워 없애거나</u> -----.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u>미연에</u> 방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생략)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 ---- <u>미리</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 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 략)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 봉사자 <u>사기양양대책</u> 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⑥ (생 략)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사기진작 대책</u> -----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 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4조(배할선의 기준) ----- ----- ----- <u>너비</u> ----- -----

당진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당진시장 김홍장

2020년 11월 30일

당진시 훈령 제110호

당진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당진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로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자문 및 심의”를 “각 위원 및 자문·심의”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건설기술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건설기술진흥법</u>」 제6조----- ----- ----- <u>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u>----- ----- ----- ----- ----- -----.</p>
<p>제7조(심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p>	<p>제7조(심의 등) ① ----- ----- ----- -----.</p>
<p>1. (생략)</p> <p>2.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9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대형 공사의 일괄 입찰 대안입찰에 관한 사항</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 가.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p>

<신 설>

-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 설>

- 4. (생략)
- ②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당진시 고시 제2020-2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당진시(항만수산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2. 공사내용 : 가곡선착장 보강공사/선착장 상치인상(h)1.5m, 연장(L)138.6m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5. 25. ~ 2020. 11. 5.
4. 실시계획 공사완료 수리일 : 2020. 11. 13.

2020. 11. 20.

충청남도 당진시장



당진시 고시 제2020-2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초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당진시 허가 제2020-2호 및 2020. 6.3.
변경허가연월일 : 2020.11.10.
2. 점용·사용의 목적
 - (**당초**)현대제철 투기장 호안조성공사에 따른 어촌계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곡선착장 보강공사 (T.T.P 보강)
 - (**변경**)현대제철 투기장 호안조성공사에 따른 어촌계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곡선착장 보강공사 (T.T.P 보강, 진입도로 조성)
3. 점용·사용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28번지 일원(가곡선착장)
4. 점용·사용의 면적(기간) : (**당초**)664.52㎡(2020.6.23.~2020.12.31.)
(**변경**)718.39㎡(2020.6.23.~2021.10.31.)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가. 성 명 : 현대제철주식회사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6.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생략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간이해역이용협의

2020. 11. 20.

충청남도 당진시장



당진시 고시 제2020-2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수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현대제철(주)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2. 공사내용
 - (당초)현대제철 투기장 호안조성공사에 따른 어촌계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곡선착장 보강공사 (T.T.P 보강)
 - (변경)현대제철 투기장 호안조성공사에 따른 어촌계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곡선착장 보강공사 (T.T.P 보강, 진입도로 조성)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2020. 9. 1. ~ 2020. 10. 31.
(변경)2020. 9. 1. ~ 2021. 10. 31.
4. 실시계획 (변경)신고수리일자 : 2020. 11. 12.

5.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생략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2020. 11. 20.

충청남도 당진시장



당진시 고시 제2020-26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10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80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당진시 고시 제2020-260호)되었기에,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30.

당진시장

-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첨
-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축척 1/1,5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도(축척 1/1,500)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축척 1/1,50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축척 1/1,500)
-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도시관리계획(한진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7,030	-	227,030	100.0	
계획관리지역	227,030	-	227,030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821	한진리주거 개발진흥지구	주거 개발진흥지구	송악읍 한진리 115-8일원	-	227,030	당진고제68호 1999.08.16.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821	한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115-8번지 일원	227,030	-	227,030	당진고제68호 1999.08.16.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7,030	-	227,030	100.0	-	100.0	
주거용지	152,105	증) 14	152,119	66.6	-	66.6	면적증가
상업용지	13,542	-	13,542	6.0	-	6.0	
녹지용지	소계	21,458	-	21,458	9.5	-	9.5
	어린이공원	1,503	-	1,503	0.7	-	0.7
	소공원	3,532	-	3,532	1.6	-	1.6
	완충녹지	2,853	-	2,853	1.3	-	1.3
	경관녹지	13,570	-	13,570	6.0	-	6.0
공공시설용지	소계	39,925	감) 14	39,911	18.0	-	18.0
	주차장용지	4,603	-	4,603	2.0	-	2.0
	도로	35,322	감) 14	35,308	15.9	-	15.9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조서: 변경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821	합계	227,030	-	227,030	227,030	-		
	1	1	5,757	한진리 128-16 일원	5,757	5,757	-	
		2	43,610	한진리 88-5 일원	43,596	43,610	증) 14	
		3	3,694	한진리 95-6 일원	3,694	3,694	-	
	2	1	4,603	한진리 95-17 일원	4,603	4,603	-	주차장 809
		2	8,502	한진리 106-1 일원	8,502	8,502	-	
		3	1,346	한진리 111-29 일원	1,346	1,346	-	
		4	6,815	한진리 111-15 일원	6,815	6,815	-	
	3	29,117	한진리 산13-1 일원	29,117	29,117	-		
	4	4,800	한진리 116-33 일원	4,800	4,800	-		
	5	2	418	한진리 108 일원	418	418	-	
	6	5,584	한진리 103-1 일원	5,584	5,584	-		
	7	14,438	한진리 112-44 일원	14,438	14,438	-		
	8	10,567	한진리 112 일원	10,567	10,567	-		
	9	9-1	4,007	한진리 106 일원	4,007	4,007	-	
		9-2	4,229	한진리 111-1 일원	4,229	4,229	-	
	10	18,094	한진리 116-90 일원	18,094	18,094	-		
	11	4,683	한진리 178-9 일원	4,683	4,683	-		
	-		1,503	한진리 85-1 일원	1,503	1,503	-	어린이공원 806
	-		1,083	한진리 108 일원	1,083	1,083	-	소공원 802
	-		613	한진리 377-7 일원	613	613	-	소공원 803
	-		1,162	한진리 374 일원	1,162	1,162	-	소공원 804
	-		674	한진리 374 일원	674	674	-	소공원 805
	-		2,853	한진리 116-35 일원	2,853	2,853	-	완충녹지 804
	-		13,239	한진리 76-3 일원	13,239	13,239	-	경관녹지 805
	-		331	한진리 178-6 일원	331	331	-	경관녹지 806
-		35,322	한진리 85-7 일원	35,322	35,308	감) 14	도로	

도면 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 (m ²)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2,119	-	152,105	152,119	증) 14	
821	1	1	5,757	한진리 128-16 일원	5,757	5,757	-	
		2	43,596	한진리 88-5 일원	43,596	43,610	증) 14	
	2	4	6,815	한진리 111-15 일원	6,815	6,815	-	
		3	29,117	한진리 산13-1 일원	29,117	29,117	-	
	4	4,800	한진리 116-33 일원	4,800	4,800	-		
	5	2	418	한진리 108 일원	418	418	-	
	6	5,584	한진리 103-1 일원	5,584	5,584	-		
	7	14,574	한진리 112-44 일원	14,438	14,574	-		
	8	10,432	한진리 112 일원	10,567	10,432	-		
	9	1	4,007	한진리 106 일원	4,007	4,007	-	
		2	4,229	한진리 111-1 일원	4,229	4,229	-	
	10	18,094	한진리 116-90 일원	18,094	18,094	-		
11	4,683	한진리 178-9 일원	4,683	4,683	-			

3)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 (m ²)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3,542	-	13,542	13,542	-	
821	1	3	3,694	한진리 95-6 일원	3,694	3,694	-	
		2	8,502	한진리 106-1 일원	8,502	8,502	-	
	2	3	1,346	한진리 111-29 일원	1,346	1,346	-	

4) 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 (m ²)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1,369	-	61,383	61,369	감) 14	
821	2	2-1	4,603	한진리 95-17 일원	4,603	4,603	-	주차장 809
	-	-	1,503	한진리 85-1 일원	1,503	1,503	-	어린이공원 806
	-	-	1,083	한진리 108 일원	1,083	1,083	-	소공원 802
	-	-	613	한진리 377-7 일원	613	613	-	소공원 803
	-	-	1,162	한진리 374 일원	1,162	1,162	-	소공원 804
	-	-	674	한진리 374 일원	674	674	-	소공원 805
	-	-	2,853	한진리 116-35 일원	2,853	2,853	-	완충녹지 804
	-	-	13,239	한진리 76-3 일원	13,239	13,239	-	경관녹지 805
	-	-	331	한진리 178-6 일원	331	331	-	경관녹지 806
	-	-	35,308	한진리 85-7 일원	35,322	35,308	감) 14	도로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1) 주거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821	송악읍 한진리 115-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A(별표 1 참고)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2) 상업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821	송악읍 한진리 106-7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E(별표 1 참고)
			권장용도	F(별표 1 참고)
			불허용도	•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인센티브항목 이행 시)	
		높 이	• 6층 이하	
건축선	• 접하는 모든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단, 건축물용도에 따라 당진시 건축조례 준수)			

■ 상업용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821	송악읍 한진리 106-7번지 일원	권장용도(F) 준수비율	• 해당항목 이행 시 0~30% 추가 인센티브 부여 (권장용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적용산식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x 0.2 x @) [@=건축물의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물 전체연면적]
		건축선 추가 후퇴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 최소 추가 이격 단위는 2m이며, 2m이상 추가이격 시 용적률 인센티브 10% 부여 •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인접 도로(보도)와 동일한 패턴으로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 최소 추가 확보 단위는 당진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바의 50%이상이며, 해당 항목 이행 시 20%추가 인센티브 부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821	송악읍 한진리 115-66번지 일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 • 경관녹지, 완충녹지, 소공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도로

■ 총괄표: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3	3,047	35,322	2	620	6,197	5	1,231	18,014	6	1,196	11,111
	변경	13	3,047	35,308	2	620	6,197	5	1,231	18,014	6	1,196	11,097
대로	기정	1	340	10,446	-	-	-	1	340	10,446	-	-	-
	변경	1	340	10,446	-	-	-	1	340	10,446	-	-	-
중로	기정	2	610	7,391	-	-	-	-	-	-	2	610	7,391
	변경	2	610	7,377	-	-	-	-	-	-	2	610	7,377
소로	기정	10	2,097	17,485	2	620	6,197	4	891	7,568	4	586	3,720
	변경	10	2,097	17,485	2	620	6,197	4	891	7,568	4	586	3,720

■ 결정(변경)조서: 변경

류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01	30	보조간선도로	340	대로2-3 송악.한진리산11-8	대로2-4 송악.한진리117-1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중로	3	803	12	주간선도로	502	대로2-801 송악.한진리116-23	소로2-806 송악.한진리102-1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변경	중로	3	803	12	주간선도로	502	대로2-801 송악.한진리116-23	소로2-806 송악.한진리102-1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841	12	국지도로	108	소로2-808 송악.한진리116-1	소로3-827 송악.한진리116-11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소로	1	801	8 ~ 10	집산도로	480	중로3-803 송악.한진리102-2	소로2-805 송악.한진리95-5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기정	소로	1	802	10	국지도로	140	중로3-803 송악.한진리375	소로1-801 송악.한진리103-13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소로	2	805	8	국지도로	131	중로3-803 송악.한진리106-10	지구단위계획경계 송악.한진리95-5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기정	소로	2	806	8	국지도로	246	중로3-803 송악.한진리106-10	소로1-801 송악.한진리111-3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기정	소로	2	807	8	국지도로	396	중로3-803 송악.한진리128-26	소로1-801 송악.한진리111-38	일반도로		당진고시제70호 1999.08.16.	
기정	소로	2	809	8	국지도로	118	대로2-4 송악.한진리178-39	소로1-801 송악.한진리178-38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소로	3	826	6	국지도로	124	대로2-801 송악.한진리112-3	소로2-807 송악.한진리115-53	일반도로		당진고제68호 1999.08.16.	
기정	소로	3	827	6	국지도로	182	중로3-803 송악.한진리116-23	대로2-801 송악.한진리116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소로	3	828	6	국지도로	174	소로2-807 송악.한진리	소로2-809 송악.한진리112-90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소로	3	829	6	국지도로	106	중로3-803 송악.한진리82	송악.한진리88-8	일반도로		충남고제250호 2013.07.3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803	중로3-803	• 선형 변경	• 실시설계에 따른 선형 변경

■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809	주차장	-	송악읍.한진리 95-17일원	4,603.0	-	4,603.0	충남고제250호 2013.07.30.	

2) 공간시설

□ 공원

■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	-	5,035	-	5,035		
기정	802	소공원1	소공원	송악.한진리 108일원	1,083	-	1,083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3	소공원2	소공원	송악.한진리 377-7일원	613	-	613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4	소공원3	소공원	송악.한진리 374일원	1,162	-	1,162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5	소공원4	소공원	송악.한진리 374일원	674	-	674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6	어린이공원14	어린이공원	송악.한진리 85-1일원	1,503	-	1,503	충남고제250호 2013.07.30.	

□ 녹지

■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	-	-	16,423.0	-	16,423.0		
기정	804	녹지	완충녹지	송악.한진리 116-35일원	2,853.0	-	2,853.0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5	녹지	경관녹지	송악.한진리 76-3일원	13,239.0	-	13,239.0	충남고제250호 2013.07.30.	
기정	806	녹지	경관녹지	송악.한진리 178-6일원	331.0	-	331.0	충남고제250호 2013.07.30.	

[별표1] 건축물 용도계획

■ 주거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도면 표시	
허용 용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도면 표시	
허용도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권장도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당진시 고시 제2020-26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6.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당고개로 136 외 13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16.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1/16 >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송악읍 영천리 산2-1	송악읍 당고개로 136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예전 큰 농장이 있던곳으로 농장길로 도로명 부여
2	정미면 덕마리 313	정미면 산동로 154-27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산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대호지면 마중리 267-12	대호지면 새마실로 237-5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옛지명인 새마실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송악읍 청금리 316-22	송악읍 순성로 822-47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순성면을 지나는 도로
5	원당동 1001-3	돌비로 26-7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인 돌비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대덕동 877-6	대덕1로 46-14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 명칭인 대덕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면천면 대치리 217	면천면 뼤여름길 22-20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뼤여름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8	우강면 세류리 30-3	우강면 세류골길 157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세류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대호지면 도이리 68-35	대호지면 초막골길 71-10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초막골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합덕읍 도곡리 151-17	합덕읍 합덕도곡길 116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도곡리 명칭 활용
11	대덕동 261-27	벚꽃길 18	2020-11-16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20-06-03	해당 전원마을단지의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합덕읍 합덕리 345-4	합덕읍 합덕성당1길 61	2020-11-16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직권부여	2012-01-01	문화제인 합덕성당 명칭 활용
13	석문면 장고항리 498	석문면 장고항로 282	2020-11-16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직권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14	읍내동 146-14	시장중앙길 112	2020-11-16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직권부여	2012-01-01	당진시장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
	우강면 부장리 521-1	우강면 신평로 436-9	2012-01-01	단순변경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신평면을 지나는 도로
	석문면 삼봉리 564-6	석문면 삼봉산로 37	2012-01-01	단순변경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삼봉산의 명칭 활용
	신평면 금천리 346	신평면 신평로 813	2012-01-01	단순변경 (신규건물 추가(증축))	2012-01-01	신평면을 지나는 도로
	신평면 한정리 358-11	신평면 원머리로 168-43	2012-01-01	단순변경 (신규건물 추가(증축))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인 원머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고대면 진관리 529	고대면 진관로 142-52	2012-01-01	단순변경 (신규건물 추가(증축))	2012-01-01	법정리 명칭 활용

당진시 고시 제2020-26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8.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90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18.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1/18 >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합덕읍 운산리 678-42	합덕읍 면천로 1590	2020-11-18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면천면 명칭 활용

당진시 고시 제2020-26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903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번지~시곡동 463-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903호)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11. 30.

당진시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별첨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03	6	집산 도로	2,967	당진농공단지 시곡동 242	중로3-지615C 수청동129-5	일반 도로	-	당진시고시 제2016-91호 (2016.6.13.)	
변경	소로	3	903	6	집산 도로	2,967	당진농공단지 시곡동 242	중로3-지615C 수청동129-5	일반 도로	-	당진시고시 제2016-91호 (2016.6.13.)	도로폭 변경

2)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903호선	소로3-903호선	·도로 용지폭 변경	·토지소유주의 토지보상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도로의 용지경계를 변경.

당진시 고시 제2020-26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3.

당진시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청로 513 외 9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닳거리길 26-5 외 12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23.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1/23 >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송악읍 청금리 158	송악읍 가청로 513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가교리와 청금리 명칭 활용
2	석문면 삼봉리 218-30	석문면 삼봉산로 350-28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삼봉산의 명칭 활용
3	정미면 천의리 176-4	정미면 정미로 751-9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정미면을 지나는 도로
4	합덕읍 성동리 248	합덕읍 성동로 91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5	신평면 운정리 27-3	신평면 닳거리길 38-10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닳거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면천면 송학리 531	면천면 대조동길 68-39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대조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송악읍 전대리 553	송악읍 방축골길 42-17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금곡리의 자연마을 명칭인 방축골 활용
8	대호지면 조금리 76-3	대호지면 부터지길 111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부터지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송산면 동곡리 16-2	송산면 장재길 154-54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장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고대면 진관리 1319-1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50	2020-11-23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7-03-20	삼선산수목원 개원에 따른 도로명 부여
	송악읍 기저서리 388-1	송악읍 톨모시로 821-50	2012-01-01	단순명칭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톨모시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정미면 모평리 21	정미면 천평로 449-7	2012-01-01	단순명칭 (별실 후 신축 기준 건물번호 유지)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천평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1/23 〉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	신평면 운정리 27-3	신평면 닳거리길 26-5	2020-11-23	건물멸실	
2	석문면 삼화리 52	석문면 송당길 79	2020-11-23	건물멸실	
3	송산면 송석리 310	송산면 당산1로 485-11	2020-11-23	건물멸실	
4	정미면 수당리 410-2	정미면 운정로 325	2020-11-23	건물멸실	
5	채운동 333-13	백암로 233-10	2020-11-23	건물멸실	
6	정미면 수당리 161-1	정미면 운정로 275-4	2020-11-23	건물멸실	
7	수청동 761-3	대덕로 235	2020-11-23	건물멸실	
8	수청동 537	고실2길 63-31	2020-11-23	건물멸실	
9	수청동 532-1	고실2길 63-29	2020-11-23	건물멸실	
10	수청동 523-2	고실2길 63-9	2020-11-23	건물멸실	
11	수청동 499	고실2길 41-11	2020-11-23	건물멸실	

순번	지번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자	폐지사유	비고
12	수청동 632	남부로 289-77	2020-11-23	건물멸실	
13	수청동 630	남부로 289-67	2020-11-23	건물멸실	

당진시 고시 제 2020 - 272호

솔피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솔피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당진시



1. 사업의 목적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지역적 차별화를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 추구로 지역민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획 제공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솔피다목적센터 조성,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CCTV설치, 주민 휴게시설 설치
 - 지역소득증대 : 저온저장창고 및 공동작업장 조성(대안 사업 계획중)
 - 지역경관개선 : 솔피쉼터 조성, 지붕 정비(대안 사업 계획중)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3. 사업비 : 2,720백만원(국비 1,904 도비 136백만원 시비 680백만원)

4.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6년간)

5. 사업의 효과

- 농어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 수준 높은 삶의 여건을 조성하여 정주의식 고취

6.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일괄 위·수탁)

7. 주요변경사항

- 기능별 사업인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변동. 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 30%미만의 계획 변경 사항임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공동체 새마을과(041-350-3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고시 제 2020 - 273호

고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시행계획(변경) 고시

고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시행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당진시



1. 사업의 목적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지역적 차별화를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 추구로 지역민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획 제공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일원
- 면 적 : 276ha(농경지 171ha, 임야 41ha, 대지 15ha, 기타 49ha)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복지회관, 산책로 정비, 테마쉼터 조성, 정류장 주변 경관 개선,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 지역경관개선 : 테마거리 조성, 마을안내판 설치, 마을안길 정비(대안 사업 계획중), CCTV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3. 사업비 : 5,177백만원(국비 3,624백만원, 지방비 1,553백만원)

4.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5. 사업의 효과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

6. 사업시행자 : 당진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일괄 위·수탁)

7. 주요변경사항

- 기능별 사업인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변동. 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 30%미만의 계획 변경 사항임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공동체 새마을과(041-350-3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고 제2020-2094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당진시장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계적 무상교통 지원대상 확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모색
-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권 증진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제2호 중 사목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일 3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안 제2조제2호,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함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교통과(교통정책팀)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화: 041-350-4522 팩스: 041-350-4549(전송 시 유선연락 요망)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단계적 무상교통 지원대상 확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모색
- 나.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 증진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제2호 중 사목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일 3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안 제2조제2호,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충청남도 운수사업 지원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 라. 기 타 :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020A충남당진137)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 . .)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청소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일3회 이용에 한해 100분의 100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 등”이란 당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u> <u>인 아동·청소년</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별표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별표]			
대중교통 이용대상별 할인율 (제4조 관련)				대중교통 이용대상별 할인율 (제4조 관련)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율	비 고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율	비 고
1. 노인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1. 노인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100</u>		2.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u>100분의 10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100분의 100</u>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u>100분의 100</u>	
3. 국 가 유공자 5. 18 민주화 유공자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3. 국 가 유공자 5. 18 민주화 유공자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제2조 제3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 급 을 직접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제2조 제3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 급 을 직접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제2조 제3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제2조 제3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30	
				4. 아동· 청소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일 3회 이용에 한해 100분의 1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당진시 공고 제2020-2100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당진시 장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반영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요소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해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보장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다.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안 제10조제1항)
- 라. 영유아 보육 위탁 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안 제12조제4항)
- 마. 불필요한 조항 삭제(중전 30조에서 25조로 축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연합회
- 바.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0. 11. 17. ~ 2020. 12. 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함

☞팩스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여성가족과
전 화: 041-350-3730, 3731 팩스번호: 041-350-3729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반영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요소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해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보장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다.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안 제10조제1항)

라. 영유아 보육 위탁 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안 제12조제4항)

마. 불필요한 조항 삭제(종전 30조에서 25조로 축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 연합회

바.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020A충남당진138)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용한다.

②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3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2.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비
3.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어린이집 냉·난방비
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보육사업 지침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위탁 계약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당진시 공고 제2020-2128호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당진시장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복지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기 휴관일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기휴관일 변경(별표)
 -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일요일”로 변경

3.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경제과(노동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42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dreamcjk@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의 비고란 중 “일요일, 공휴일은 20%”를
“2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제10조 관련)</p> <p>1. 시설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td> </tr> </tbody> </table> <p>※ 기타 시설 또한 위 시설사용료에 준한다.</p> <p>2. 부속설비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냉난방시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rowspan="3">○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td> </tr> <tr> <td>방송시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r> <tr> <td>빔프로젝터</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r> </tbody> </table> <p>3.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수 강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교육프로그램</td> <td>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10,000원	빔프로젝터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	10,000원	○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제10조 관련)</p> <p>1. 시설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td> </tr> </tbody> </table> <p>※ 기타 시설 또한 위 시설사용료에 준한다.</p> <p>2. 부속설비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냉난방시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rowspan="3">○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td> </tr> <tr> <td>방송시설</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r> <tr> <td>빔프로젝터</td> <td>○ 1회 사용 (2시간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r> </tbody> </table> <p>3.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h>수 강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교육프로그램</td> <td>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10,000원	빔프로젝터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	10,000원	○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10,000원																																																											
빔프로젝터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	10,000원	○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평일 18:00이후, 토요일 13:00이후 20% 가산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 시간 초과시 매 시간당 20%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방송시설	○ 1회 사용 (2시간이내)	10,000원																																																											
빔프로젝터	○ 1회 사용 (2시간이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프로그램	교육과목당 (1개월 기준)	10,000원	○ 교재 및 재료비 - 수강생 부담																																																										

< 관 계 법 령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휴관일 변경 설문 결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복지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기 휴관일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휴관일 변경 (안 제8조제1항제1호)

- 매주 월요일 휴관을 “일요일”로 변경

나. 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 첨부 서류 변경 (안 제11조제1항제2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

3.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14.(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 18:00까지 당진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경제과(노동정책팀)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4042 팩스 : 041-350-4049 이메일 : dreamcjk@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당진시 규칙 제 호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같다”를 “호와 같다”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토·일요일”을 “토요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 휴일 및 매주 월요일”을 “공 휴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관 의”를 “복지관의”로, “호의서류”를 “호 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감증명서 1통”을 “신분증 사본 1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호 중 “인감증명서 1통”을 “신분증 사본 1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호 중 “인감증명서 1통”을 “신분증 사본 1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사용료 반환) ① ----- ----- -----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11월~2월은 21:00)로 하되, <u>토·일요일</u>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제7조(이용시간) ----- ----- ----- <u>토요일</u>----- ----- -----.</p>
<p>제8조(휴관)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u>공휴일</u> 중 <u>일요일</u>을 제외한 공휴일 및 <u>매주 월요일</u></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휴관) ① ----- -----.</p> <p>1. ----- ----- <u>공휴일</u> <u>및 일요일</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복지관</u>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u>호의서류</u>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 ① ----- ----- <u>복지관</u>의 ----- ----- ----- <u>호의 서류</u>----- -----.</p>

<p>1. (생략)</p> <p>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인</u> <u>감증명서 1통</u></p> <p>3. (생략)</p> <p>② ~ ④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u>신</u> <u>분증 사본 1부</u></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7호 서식)</p> <h4 style="text-align: center;">위탁운영 신청서</h4>	<p>(별지 제7호 서식)</p> <h4 style="text-align: center;">위탁운영 신청서</h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위탁사무명</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기관(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주 소</td> <td style="width: 15%;">전 화 번 호</td> <td></td> </tr> <tr> <td>대 표 자</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직현황</td> <td colspan="3">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운영현황</td> <td>주요사업</td> <td colspan="2"></td> </tr> <tr> <td>보유시설</td> <td colspan="2"></td> </tr> <tr> <td>보유장비</td> <td colspan="2"></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4">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인감증명서 1통</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td> </tr> </table>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인감증명서 1통</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위탁사무명</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기관(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주 소</td> <td style="width: 15%;">전 화 번 호</td> <td></td> </tr> <tr> <td>대 표 자</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직현황</td> <td colspan="3">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운영현황</td> <td>주요사업</td> <td colspan="2"></td> </tr> <tr> <td>보유시설</td> <td colspan="2"></td> </tr> <tr> <td>보유장비</td> <td colspan="2"></td> </tr> <tr> <td>기 타</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4">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신분증 사본 1부</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td> </tr> </table>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신분증 사본 1부</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인감증명서 1통</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	주요사업																																																																														
	보유시설																																																																														
	보유장비																																																																														
	기 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div> <h4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장 귀하</h4>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u>신분증 사본 1부</u>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9호 서식)</p> <p>위탁기간 갱신신청서</p>	<p>(별지 제9호 서식)</p> <p>위탁기간 갱신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위탁사무명</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width: 20%;">기관(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전 화 번 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탁기간 (종 전)</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간 (신 규)</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당 진 시 장 귀 하</p> <p>※ 첨 부 서 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위탁사무명</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width: 20%;">기관(단체)명</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전 화 번 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신청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탁기간 (종 전)</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간 (신 규)</td> <td colspan="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당 진 시 장 귀 하</p> <p>※ 첨 부 서 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위탁사무명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	위탁기간 (종 전)																																										
	신청기간 (신 규)																																										

< 관 계 법 령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